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. 5. 10 선고 2024가단551 판결 [건물명도등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피 고 주식회사 C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5. 1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

가.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2층 208.71㎡ 중 별지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을 인도하고,

나. 2020. 8. 11.부터 위 가.항 기재 건물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25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[별지]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

판사 정희철

별지